

-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3
----------	------

2017년 8월 3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8월 17일, 유광상 의원 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광상 의원)

가. 제안이유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나 감독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마저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인근 주민이 무방비 상태로 비산 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 관할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부여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할 하급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업의 중지·시설의 사용중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건의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타사항 : 없음

3. 이송처

가. 국 회 :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 부 : 환경부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건의안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비산먼지 관련 규정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사업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에 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는 시·도지사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및 자치구의 비산먼지 지도·감독 업무분장〉

서울시 업무	자치구 업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등 보고 (환경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접수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행정 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도로 청소에 관한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월보 등 제출(서울시)

2) 비산먼지 발생 및 점검 현황

- 최근 미세먼지(PM2.5) 발생이 심화되고 있고 인체 유해성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PM2.5) 발생원 중 비산먼지 기여도는 약 22%¹⁾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있어 비산먼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미세먼지(PM2.5) 발생원별 기여도〉

배출원 비율	자동차	난방·발전	건설기계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100%	25%	39%	12%	22%	2%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대상은 2017년 6월 현재 총 2,012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중 건설업(건설현장)이 약 97%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수송차량 비산먼지 억제 여부, 살수 시설 여부, 통행도로 먼지 억제 조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대상〉

(단위 : 개소)

대상 연도	건설업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운 영	합 계
2016	1,751 (97%)	10 (1%)	44 (2%)	0 (-)	1,805 (100%)
2017.6	1,955 (97.2%)	10 (0.5%)	44 (2.2%)	3 (0.1%)	2,012 (100%)

- 2016년의 경우 총 점검대상 1,805개소에 대한 점검횟수는 5,366회로 개소 당 평균 3회의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점검결과 223개소가 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상응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음.

1)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16년, 서울특별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단위 : 건)

연도	점검횟수	위반개소수	조치내용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병과가능)	고발
2016	5,366	223	4	14	126	79	80	8
2017.6	4,362	212	3	31	97	81	73	9

3)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 부여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할 구청에서는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관할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과 개선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건의안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사한 사례로 ‘자동차 등록’,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결과 조치(개선명령 등)’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되어 있음.

다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수행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 이후에는 서울시의 인력과 재정 투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부여 유사 사례

- 자동차 등록

: 시·도지사(「자동차관리법」 제8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위임(「시행령」 제17조)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감독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감독 결과 조치(개선명령 등)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7항)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

-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 현장 가림막을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인접한 초등학교에서는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공사장을 가로질러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흙먼지로 인해 체육수업은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한 방송사 취재진에서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지역의 당일 미세먼지농도는 ‘보통’인 $55\mu\text{g}/\text{m}^3$ 이었는데 이곳은 두 배 가까이 높은 $97\mu\text{g}/\text{m}^3$ 로 나타나 ‘나쁨’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제43조에 따르면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 따라서 관할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도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하여 비산면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의 이행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7. 8. 1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정(안)
<p>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생 략)</p> <p>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③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p> <p>-----</p> <p>-----</p> <p>-----</p> <p>-----.</p>